

제 안 설명서

【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】

김재홍 의원 외 6인

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(개정조례안)

의안
번호 88

발의년월일 : 2003. 12. 18.
발의 의원 : 김재홍의원외 6명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(개정 2003. 12. 18. 대통령령 제18161호)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함(안 제2조 제2항)
- 나.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함(안 제2조 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(발췌) 1부

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

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90만원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는 20만원으로 하며, 지급일은 영주시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하고 지급일은 영주시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으로 하며, 지급일은 영주시소속공 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

관 련 법령(발췌)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
-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<개정 1999.8.31, 2003.7.18>

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

-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1994.3.16]

【 지방자치법시행령 】

제15조 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
-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1995.12.30, 1999.12.31>
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

<개정 1999.12.31>

(별표 5) <개정 1999.12.31>

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 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원	월 900,000원 이내	월 200,000원 이내

의안검토보고서

【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자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운영위원회

전문위원	문창주
------	-----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가. 의안번호 : 제 88 호

나. 의 안 명 :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다. 발의자 : 김재홍 의원외 6인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정비하고자함.

3. 주요골자

가.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함(안 제2조 제2항)

나.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함(안 제2조 제2항)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 의정
활동비의 지급 범위를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
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